



LOCATION LA중앙일보 > 뉴스 > 오피니언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-가 +가 | 내 블로그에 담기

오피니언

외부 기고 칼럼

본 기사에 대한 댓글

- 0 개 -

[이민] 가영주권 받고 이혼하면 추방 [LA중앙일보]

이동찬 변호사

기사입력: 03.28.08 18:01

문=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1년 10개월 전에 조건있는 가영주권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려 하는데 이혼하면 추방을 당하나요?

답=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건있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2년이 되기전 90일 내에 조건을 해제하는 공동청원서(I-751)를 접수해야 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공동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것입니다.

그러나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청원서를 접수치 못하면 면제신청을 하신 후 정식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.

면제신청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결혼이 이혼으로 종결됐고 공동청원서(I-751)를 접수하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이 아닐 때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가 미국시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 혹은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잃어 버리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가능합니다.

귀하는 현재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. 이민국 방침에 의하면 이혼이 계류된 상태에서는 이민국에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만약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공동청원서도 접수할 수 없고 이혼절차를 시작해 이혼이 계류 중이라 면제도 신청하지 못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.

그리고 공동청원서를 배우자의 협조로 접수했다라도 청원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면 거절되어 역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추방소송을 당한다해도 이민판사에게 소송절차연기(Continuance)를 요청해 이혼이 종결된 후 면제를 신청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결론으로 이혼절차를 시작하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추방은 피할 수 있습니다.

TEXT PRO 건담 모험

JBC

환영 우정

동영

베스

- 1 'UFC
- 2 [남
- 3 집집
- 4 총기
- 5 최진
- 6 가짜
- 7 中 멸
- 8 최진

속보

베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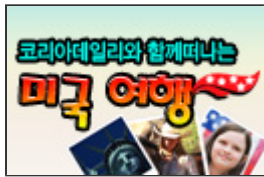
문의:(213)291-9980

- ▶ 정선희 '故최진실 의붓아버지 이야기까지...'
- ▶ 오늘은 아내를 위해 모텔서 색다른 밤을
- ▶ [미국Talk] 불체자가 무슨 중죄인이나?

- ▶ 최진영 “누나, 악마같은 백모씨 무섭다했다”
- ▶ 세계경제 휘청해도...10만불 포르세 '불티'
- ▶ [Blog] 흥합요리의 진수

뉴스홈으로 쥘 맨위로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내 블로그에 담기



일본 궁술대회



벨기에식 흥합요리



드디어 서부의 끝



가보고 싶은 세계여행

Google ADVERTISEMENT

LA 무지개 택시 www.rainbowlmotour.com
213.505.5220 주정부허가 20464-P 공항픽업 호텔예약 일일관광 골프투어

박명석 이민 변호사 www.eminlawyer.com
투자이민, 취업이민, 종교이민, 미국비자, 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담.

미국명문대 합격보장 www.useduconsulting.com
고품질유학 아이비리그 UC 보딩스쿨 양민박사(닥터양) 22년간 수만명 합격

나도 한마디...!

•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.

Comment input field

감정표현: [emojis]

글올리기

YELLOW PAGE

검색

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

미소안면침
으로
주름제거

아이비은행
15만불 무담보

아인슈타인
아카데미

주택·사업체
코암부동산

스스로 학습
재능교육



1 화장

2 [뉴욕

3 현명

코리아데



교회

4. 한

<관



일방

H1E

21세

전문



쿠폰

항공

이혼



